우선주에는 배당 우선주, 잔여재산 우선주, 상환우선주, 전환우선주, 상환전환우선주(=전환상환우선주) 등이 있습니다.

| 종 류 | 설명 '보증구' |
|-------|--|
| 우선주 | • 이익 배당(배당 우선주)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잔여재산 우선주)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주식 |
| 상환주 | 우선주 중 발행시부터 장차 회사가 이익으로 상환하여 소멸시킬 수 있는 주식 실무에서 상환주식은 우선주를 발행하는 경우 그 우선주의 내용중의 하나, 즉 상환조항 부가되는 방식으로 발행 |
| 전환주 | <u>주주의 청구에 의하여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되는 주식</u> 실무에서는 전환주식을 발행할 때 우선주를 발행하고 전환권을 행사하면 보통주로 전환되도록 설정 |
| 상환전환주 | • 우선주, 상환주, 전환주의 특징을 모두 가진 주식 |

2. 우선주 장점

2.1. 우선주

우선주는 보통주와 다른 방식으로 일정한 이익을 배당받아 투자원금에 대한 금리적 성격이 강하며, 우선주는 사채권자와 비슷한 지위를 갖게 됩니다. 투자자에게 다양한 내용의 주식을 팔아 **회사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2.2. 상환주

부자자가 주식를 인수하되 일정한 기간동안 회사를 지켜보다가 만약 회사가 잘 될 것 같으면 주식을 그 다로 보유하고, 반대로 회사의 전망이 어둡다면 다시 회사한테 되팔 수 있습니다.

2.3. 전화주

우선주 1주를 나중에 보통주 1.2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주식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회사의 경영실적이 좋지 않다면 주주는 우선주를 보유하며 우선 배당을 받는 것이 유리하나, 회사의 경영상태가 좋아져 배당 이익이 늘어나고 주가도 상승한다면 우선주를 전환하여 우선주보다 많은 수의 보통주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매수한 주식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정해진 가격으로 회사에 되팔 수 있는 이른바 '상환주식'의 주주가 상환권을 행사했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돈을 모두 받지 못했다면 여전히 주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항소심은 상환권을 행사하면 주주로서의 자격을 잃는다고 봤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상환주식은 주주가 회사에 대해 주식을 상환해갈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즉 상환권이 보여된 주식입니다(상법 제345조 제3 항). 상환권이 회사 측에 보여되어, 회사가 필요한 때 주주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주식을 상환받을 수 있는 형태로 발행할 수도 있지요(상법 제345조 제1항). 다만, "상환"은 회사의 "배당가능이익(상법 제462조)"이 발생한 경우에만 할 수 있어서, 회사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때에만 상환권 행사가 가능하겠습니다.

상환주식을 활용할 경우, 회사는 이를 통해 "회사채 발행"과 유사한 형태로 자금조달을 할 수 있고, <u>투자자는 회사가 잘 운영되어</u>서 "배당가능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대한 조기에 상환청구를 할 수도 있는 선택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